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 21 선고 2018가단543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고유한회사 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남장현

변론 종결2019. 11. 26.

판결 선고2020.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429,6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자인 C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박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4. 6.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 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경매 신청일과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로 피고를 감수보존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처분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6. 5.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C의 위임을 받은 피고로 하여금 감수보존하게 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감수보존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6.경 이 사건 감수보존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인으로서 전북 부안군 F에 정박되어 있던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취득한 다음 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의 감정가액은 1억 4,460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제1, 2회 매각기일에 각 유찰되었고, 제3회 매각기일(2014. 12. 8.)에 80,11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2. 26. 배당할 금액인 80,187,474원(매각대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에서 집행비용 42,816,45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7,371,024원 중 96,990원을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군산시에, 36,232,213원을 2순위 교부권자인 군산세무서에, 나머지 1,041,821원을 2순위 교부권자인 군산시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 16.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비용으로 39,415,060원을 청구하였고, 위 집행비용 42,816,450원에 위 돈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인으로서 직접 또는 타인을 고용하여 감수보존 업무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이 매각될 때까지 선체와 속구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를 하는 등 집행처분을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관리 업무를 하지 않는 등 선박 감수보존 행위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선박이 위치하고 있던 지역은 정상 선박항이 아니어서 감수보존에 적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감수보존인으로서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감수보존 비용을 경매 법원에 청구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경매 법원으로부터 감수보존비용으로 41,017,150원을 수령하여 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 중 피고가 부당하게 수령하여 간 위 41,017,150원이 집행비용으로 공제되었는바, 피고가 지급받은 위 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 기간인 2014. 6.

6.부터 2015. 1. 20.까지 이 사건 선박을 수심이 얇은 지역에서 장기간 정박시켰고, 바닷물의 수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체 바닥에 구멍이 발생하고 선체 일부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선체가 기울어짐으로써 전복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건 선박의 정박 현장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응찰을 포기하는 등으로 2회나 유찰되었다. 이 사건 선박이 1회 매각기일에 감정가인 1억 4,460만 원에 매각되지 못하고 3회 매각기일에 불과 80,187,474원에 매각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감수보존업무의 직무 유기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그 차액인 64,412,526원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64,412,5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은 경매절차 중에는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박 및 속구의 은닉, 훼손 등에 의한 가치감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17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정하여진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존인은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필요한 조치 속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선박의 고장 수리도 포함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9 내지 14, 19,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감수보존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부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고용하여 감수보존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감수보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적절하지 않거나 감수보존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146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C과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 관리 업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의 신청에 따라 경매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인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여 왔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 및 법원의 감수보존인 지정 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한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위 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감수보존비용 전부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9 내지 14, 19,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고의·과실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감수보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박이 감정이 이상으로 당연히 매각될 수 있었다거나 매각기일에 2회 유찰된 것이 피고의 위와 같은 감수보존 업무 불이행에 기한 것이라는 점 등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제3회 매각기일인 2014. 12. 28. 또는 늦어도 원고의 근로자인 G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업무를 수행하였던 H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화를 나눈 2015. 1. 10.경에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의 발생 등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8. 20. 경매법원에 자료 공개요청을 하여 이를 확인할 때까지 집행비용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툰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2. 26. 무렵에는 이 사건 선박의 실제 매각금액, 이 사건 선박의 상태 등을 인식하고 있어 손해의 발생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원고의 직원이었던 G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갑 제13호증)에는 2014. 11. 26. 이 사건 선박이 침수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선주의 지시를 받고 I과 함께 현장에 들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원고는 위 무렵에 이 사건 선박에 발생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9. 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여러모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유진

별지

1) 원고는 당초 손해배상청구권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9. 8. 1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청구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임을 전제로 이를 다투었고, 원고 역시 2019. 10. 25.자 준비서면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